

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1. 제정이유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22.07.19)으로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던 행정처분권한을 일부 환원함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「행정처분심의위원회」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건설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등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
- 나.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역할
- 다.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의 및 심의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국토교통부훈령 제1584호

「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. 1. 13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